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1. 21 선고 2024가단3178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24.

판결 선고2024. 11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7,73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7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○ 갑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

원고를 기망하여 2022. 4. 23.부터 2023. 8. 19.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62회에 걸쳐 합계 4,77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.

○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,773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. 7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민수